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5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3. 개정이유

-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,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- 민간위탁 동의안(의회 제출) 세부 내용 명시(안 제5조의2)
- 수탁기관 모집 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조항 신설(안 제6조제2항)
- 위원의 해촉사항 명시(안 제8조의2)
-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(안 제8조의3)
- 위탁사무 계약서 사항 구체화(안 제9조제2항)
- 위탁사무 처리사항 감사 조항 신설(안 제15조의2) 등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,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4조2에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을,
 - 안 제5조2에서는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요구시 구체적으로 포함해야할 사항을 마련하였고,
 - 안 제6조2항에서는 수탁기관 모집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는 내용을,
 - 안 제8조2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의 해촉 사항을,
 - 안 제8조3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,
 - 안 제9조2항에서는 위탁사무 계약서 작성내용 구체화를,
 - 안 제15조2에서는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실시를,
 - 안 제17조3항에서는 성과평가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음.

- 이 조례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내용의 구체화, 엄격한 관리·감독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